

항목: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발행: 2012/06/26 번호: D-160

제목: 공석 충원을 포함한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발 절차

페이지: 2 중 2

-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Citywide Council on English Language Learners: CCELL) 지명자로 CCHS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후보는 반드시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에 지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페이지 4, 섹션 V.C 참조)
- 공익 대변인(Public Advocate) 임명 CEC 위원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공익 대변인 사무실에 지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페이지 4, 섹션 V.D 참조)
- CCHS 공석 충원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CCHS 또는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 (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에서 지원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페이지 5, 섹션 IX.A.2 참조)
- “가정 참여 지원실(OFEA)”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FACE)”로 변경된다.

개요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CCHC)는 투표권이 있는 13인의 위원과 투표권이 없는 1인의 학생 위원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이 있는 13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공립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위원 10인("학부모 위원");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CSE)에서 임명한 위원 1인 ("CCSE 임명자"); 뉴욕시 ELL 위원회(CCELL)에서 임명한 위원 1인("CCELL 임명자"); 뉴욕시 Public Advocate 에서 임명한 위원 1인 ("Public Advocate 임명자"). 본 규정서는 자격 요건 및 CCHC의 위원 선출과 관련된 추천 및 선출 절차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제공한다. CCHC는 뉴욕 공개회의법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I. 자격 요건

A. 학부모 위원 및 CCSE, CCELL, Public Advocate 임명자

1. 현재 고등학교에¹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만이 CCHC에 본인을 자가추천 할 수 있다. 후보 자격은 부모가 CCHC에서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자격을 갖추었으나 임기 중 자녀가 더 이상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아서 더 이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부모로서의 자격이 종료되는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활동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²
2.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 a.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당의 선출 또는 임명 보직(전국, 주, 법원 또는 기타 정당 협의회의 의원 또는 대의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은 제외)을 맡고있는 사람;
 - b. 현재 교육청(DOE)에 고용된 직원.
 - c.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뉴욕시 위원회 또는 학군 교육 위원회(CEC)에서 해당 위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이런 위원회 또는 CEC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및
 - d. 다른 뉴욕시 위원회 또는 기타 CEC에 소속된 사람
3.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봉사 자격이 없다:
 - a. 교육 정책 패널 위원;
 - b. 학부모회/학부모교사회(PA/PTA), 학교 리더십 팀, 학군 회장 위원회, 보로 고등학교 위원회, 타이틀 I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학교 이사회에서 해당 협회, 팀, 위원회, 협의회 또는 이사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해당 협회, 팀, 위원회, 협의회, 또는 이사회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및

¹ 학부모란 부모 (출산 또는 입양, 의붓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법률적인 보호자 또는 아이와 부모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으로 정의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대신에 정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² 법령에 따라, CCHC의 모든 학부모 위원은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여야 한다.

- c. 교육청 윤리담당관 또는 교육감 규정 D-125에 따라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뉴욕시 이해관계 상충 법에 의거,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B. 학생

재임하는 해에 12학년(씨니어)인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자신의 학교에서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임원직을 맡게 된 학생은 뉴욕시 학생 자문 위원회(CSAC)에 본인을 자가추천하는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서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약 30학점의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12학년으로 간주한다.

II. 학부모 추천

- A. [CCELL에서](http://www.nycparentleaders.org) 봉사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다음의 온라인 주소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인을 추천할 수 있다:www.nycparentleaders.org. 후보자는 한 개 이상의 커뮤니티 및/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지원할 수도 있다. 복수 지원은 허용되나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는 없다. 신청 접수시 복수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고자 지원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명시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조건부 선출된 후보자는 조건부 선출된 위원회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명시한 위원회에 배치된다.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는 신청서 제출 일정을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임: www.nycparentleaders.org.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FACE에 연락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학교 및 로컬 기관들의 목록에 대해 문의한다.
- B. 후보자는 자녀가 재학중인 각 공립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지원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후보자는 각 학교의 대표로 간주된다. 후보자가 대표할 각 학교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교육감 재량에 따라 자격박탈의 사유가 된다.
- C. 학부모 및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각 후보의 신청서 일부 (성명,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자기 소개와 봉사 내역 및 개인 성명)가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www.nycparentleaders.org.

III. 선출자(SELECTOR)

CCHS의 학부모 위원의 선출자는 교육감 규정서 A-660에 명시된 해당 보로 내 모든 고등학교의 PA/PTA 임원 3명으로 구성된다.³ PA/PTA 회장 및 임원 중 선출 절차에 입후보 하는 사람은 선출자로 참여할 수 없다. PA/PTA는 선출 절차에서 입후보 하는 임원을 대리할 위원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IV. 후보자 포럼 절차

- A. 각 보로에서는 보로 고등학교 회장단이 FACE와 협력하여 CCHS 후보자들이 선출자들과 기타 학부모 및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 앞에서 출마소견을 발표하는 후보자 포럼을 주관한다.
- B. 후보자 포럼은 반드시 후보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그러나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5월 두번째 화요일 지명된 선출자가 투표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보로 회장단은 후보자 포럼이 진행될 교육청 장소, 날짜 및 적절한 시간을 결정하고 후보자 포럼 진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한다. FACE에서 후보자 포럼과 관련된 모든 필수 허가서 취득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C. FACE는 후보자 포럼에서 배포될 해당 학군 CCHS 경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의 성명과 출마소견 등을 담은 CCHS 후보자 책자 사본을 보로 고등학교 회장단에 제공한다. FACE는

³ 공동 회장, 공동 서기 또는 공동 회계의 경우 나머지 PA/PTA 임원회 회원들이 어떤 임원이 선출자로 봉사할지 결정한다.

필요하다면 후보자 포럼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 지원을 한다.

V. 선출 절차

A. 학부모 위원 선출 (투표)

1. 선출자는 투표를 위해 반드시 www.nycparentleaders.org에 로그인 한다. 일단 로그인 하면, 각 선출자에게는 선출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관장하는 보로에 위치한 학교들을 대표하는 CCHS 입후보자들의 명단이 담긴 투표용지가 제공된다.⁴ 각 선출자는 두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FACE는 투표용지 제출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선출자에게 제공한다.
2. 투표 결과를 기록할 때:
 - a. 각 보로 별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2인의 후보가 자격의 확인 여부에 따른, 조건부로 선출된다.⁵ 그러나 섹션 V.A.2. b에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학교도 CCHS에 1인 이상의 대표를 두지 않도록 한다. 만약 동일한 학교에서 한 명 이상의 후보가 선출되었다면, 더 많은 투표를 받은 후보가 선출된것으로 간주한다. 더 적은 투표를 받은 해당 학교의 다른 후보자는 고려에서 제외되며 아직 CCHS에 대표를 보유하지 못한 학교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조건부로 선출된것으로 간주된다.
 - b. V.A.2.a에 설명된 제한 규정은 해당 제한 규정을 적용했을 때 열 명 이하의 학부모가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후보자 양자 또는 그 이상이 동일한 투표를 얻거나 또는 처음에 열 명 이하의 후보자가 선출된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런 경우, 각 선출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다.
 - a. CCHS 위원석의 한 석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투표로 인해 재선거가 필요할 때, 동일한 투표수를 얻었던 후보자들 만이 결선 투표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 b. 섹션 V.A.2.a에 정해진 바와 같이, 동일 학교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1개 이상의 의석이 충원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이미 선출되지 않고 CCHS에서 봉사하는 대표가 없는 학교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다. 결선 투표의 실패가 모든 의석을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섹션 V.A.2.b에 정해진 예외가 적용된다.
 - c. 섹션 V.A.3.a 및 V.A.3.b에 정해진 바 외의 이유로 한 석 또는 그 이상의 의석이 공석으로 남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아직 선출되지 않은 모든 후보자는 결선 투표에서 선출될 자격이 있다.
 - d. 상기 섹션 V.A.3.a, V.A.3.b 및 V.A.3.c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번의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여러번의 결선 투표는 동일한 시간에 섹션 V.A.3.a, V.A.3.b 및 V.A.3.c 요건을 준수하는 후보자 그룹 별로 각기 다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e. 만약 결선 투표 절차를 통해서도 모든 의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청을 위해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상기 섹션 V.A.3.a, V.A.3.b 및 V.A.3.c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격 사항에 대한 동일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한다. 그러나 최초 선출 절차와 결선 투표에서 표를 전혀

⁴ 후보의 자녀가 각기 다른 보로에서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후보자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각 보로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등재할 수 있다.

⁵ 복수의 보로를 대표하는 후보자는 CCHS에서 하나의 보로만을 대표하도록 선출될 수 있다. 복수의 보로를 대표하도록 조건부 선출된 경우 후보는 반드시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보로를 선택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보로에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X.A.2 및 IX.A.3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회의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둔다.

4. 어떤 보로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선출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 그러나 선거가 실시된 해의 6월 25일 및 이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 된다면, 최초 선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보로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⁶ 만약 이런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동점이 되는 경우, 교육청을 위해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을 통해 위원을 결정한다. 만약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가 없는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X.A.2 및 IX.A.3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CCHS에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둔다.
5.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B. CCSE 임명

CCSE는 IEP를 가진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 1인을 선출자로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CCSE 임명자로서 CCHS에서 봉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자는 FACE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FACE에 제출하여 CCSE로 전송되도록 한다.

C. CCELL 임명

CCELL은 뉴욕시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1인을 선출자로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CCELL 임명자로서 CCHS에서 봉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자는 FACE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FACE에 제출하여 CCELL로 전송되도록 한다.

D. 뉴욕시 Public Advocate 임명

뉴욕시 Public Advocate 은 선출권자 1인을 임명한다. 자격은 뉴욕시 주민으로서 광범위한 사업, 경영 또는 교육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뉴욕시 학교 교육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Public Advocate의 지명을 원하는 CCHS에서 선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Public Advocate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얻어 Public Advocate 사무실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E. 학생 위원 임명

교육감 직속 뉴욕시 학생 자문위원회(CSAC)는 제출된 지원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면접을 거쳐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한 뒤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임명되도록 한다.

VI. 조건/자격의 검토

학부모 후보자의 조건부 선출 이후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인은 후보자가 CCHS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교육감이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면, FACE의 보로 및 중앙 사무실에서 교육감의 결정 내용이 공적인 조사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표후 7일 내 제공될 것이다. 해당 결정에는 이런 발표에 대한 사실 및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모든 후보자는 CCHS에 이미 대표를 선출한 학교가 아닌 학교의 후보자인 경우 다음으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후보자로 대체될 것이다.

VII. 일정

CCHS 위원은 2011년 5월 두번 째 화요일 선출되며 이 후 매 2년마다 선출을 실시하고, 이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도록 한다. 선출 절차는 90일 동안에 진행된다. 여기에는 절차의 대중 공개가 허용되는 시간, 학부모 후보, 후보 포럼 및 선출자의 투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FACE는 이 규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정확한 일정을 게시할 것이다.

⁶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6월 25일 이후에 실격 사유가 발생한 다면, 본 규정서의 공석 처리 절차 섹션 IX.A.2 및 IX.A.3가 적용된다.

VIII. 사직

A. 학부모 위원 및 CCSE, CCELL 임명자

학부모 위원이나 CCSE 및 CCELL 임명자는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의 수석 가정 참여 담당관이 교육감 대리로 사직서를 접수하도록 지명한다. CCSE 및 CCELL 임명자는 또한 반드시 자신을 임명한 위원회에 사직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신자는 자신을 임명한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사직서는 향후 날짜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한(이 역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나서는 안됨), 수석 가정참여 담당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다.

B. Public Advocate 임명자

Public Advocate이 임명한 위원의 사직은 반드시 Public Advocate 앞으로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사직서는 향후 날짜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한(이 역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나서는 안됨), Public Advocate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Public Advocate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다.

C. 학생 위원

학부모 위원의 사직은 반드시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사직서는 향후 날짜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한(이 역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나서는 안됨), 교육감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다.

IX. 공석

A. 학부모, CCSE 및 CCELL 임명자 및 Public Advocate 임명자 공석

- 만약 CCHS 위원이 본인의 임기 동안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통보하고 CCHS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직책에서 제명 된다.⁷ 각각의 불참과 서면으로 제공한 이유는 회의의 공식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Public Advocate에서 지명한 위원의 모든 불참은 CCHS의 업무 총괄(Administrative Assistant) 또는 회장이 Public Advocate에 보고하여야 한다. CCSE 및 CCELL에서 임명한 위원의 모든 불참은 CCHS의 업무 총괄(Administrative Assistant) 또는 회장이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적절한 사유가 없이 3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CCHS는 정기 회의에 해결 방안으로 공석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교육감(및 Public Advocate, CCSE, CCELL 중 해당되는 곳)에게 이런 상황을 통보한다.
- 임기가 남아 있는 CCHS의 위원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CCHS는 공개 회의에서 공석을 채운다.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학부모 공석 충원을 위한 추천을 서면으로 표명하고 총원 전 CCHS와 논의할 기회를 가진다. CCHS의 학부모 위원 공석을 채우는데 관심있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CCHS 또는 FACE에서 받을 수 있다.

⁷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상참작 가능한 불참 사유로 유효하다: 친척의 사망 또는 친척의 장례식 참석, CCHS 위원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배심원 소환을 포함한 법원 출석 의무, 군인의 의무, CCHS 회의 불참을 피할 수 없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 및 기타 CCHS에서 적절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 .

3. 만약 후보간에 동일한 표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60일 내에 CCHS에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투표로 위원을 결정한다. CCHS에서 기타 이유로 60일 이내에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이 공석을 채울 수도 있다.
4. CCSE 또는 CCELL에서 임명한 위원직에 공석이 발생하면 해당 직을 임명한 위원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봉사를 할 위원을 지명한다. CCSE 또는 CCELL 임명직 공석을 채울 의사가 있는 개인은 FACE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FACE에 제출하여 CCHS 또는 CCELL 전송되도록 한다.
5. 공익 옹호실에서 지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익 옹호실에서 남은 임기 동안 봉사를 할 위원을 지명한다. Public Advocate 임명 위원의 공석을 채우길 원하는 후보자는 Public Advocate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얻어 Public Advocate 사무실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B. 학생 위원 공석

학생위원 공석이 발생할 경우 CSAC에서는 이전에 교육감에게 자가 추천서를 제출한 다른 12학년 학생을 추천하여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한다. 교육감은 CCHS 및 FACE에 임명 사실을 알린다.

X. **불만제기 절차**

본 규정의 준수에 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지 5일 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게 된 특정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XI. **기술적 지원**

FACE에서 본 규정서에 포함된 절차의 실행에 관해 총괄하며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전화:	<i>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i>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 Room 503 New York, NY 10007	팩스:
212-374-2323		212-374-0076